

한국성서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한국성서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성서의 밑알정신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성취함에 있어 지속적인 훈련과 진리 탐구에 앞장서 나가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대명제 아래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주력하고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기독교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설치) 본회는 한국성서대학교 안에 둔다.

제 4 조(운영) 본회는 회원에 의하여 성서적이며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원칙하에 본회의 회칙에 의해 운영된다.

제 5 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교 학사과정의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상태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 6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사업계획 및 재정, 그 밖의 본회 운영전반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갖는다.

제 7 조(구성) 본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운영위원회, 집행부, 전공학회, 동아리연합회로 구성한

[전면개정2015.1.1.]

다.

제 8 조(학교 당국과의 관계) 학생활동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학교 당국의 회의에 총학생회장이 전체 학생을 대표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단, 징계에 관한 경우 해당학생은 자기를 위하여 변론할 수 있다.

제 9 조(활동제한) 본 회의 회원은 본교의 건학이념 및 학칙과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 2 장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제 10 조(지위)

1. 총학생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2.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그 직을 계승한다.
3.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 전 까지 총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운영위원회가 전공학회장 중에서 선출한다.
4. (신분보장)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본 회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투표의 불신임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위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투표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이며 투표자 중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11 조(임기)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매 학년도 1 월 1 일부터 익년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단, 당선된 후 임기 전 차기 총학생회장 활동을 보장한다.

제 12 조(선출)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은 본 회칙 선거 규정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감독 하에 선출한다.

제 13 조(업무 및 권한) 총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

[전면개정2015.1.1.]

다.

1. 본 회의 운영위원회와 집행부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관한다.
2. 집행부 임원의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3. 총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속기구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임무완료시 총학생회장의 결정으로 해체한다.
4. 전체 사업계획서와 예산 및 결산을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5. 본 회의 대외 활동에 있어서 대표권을 갖는다.
6. 본 회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 당국의 회의에 학생 대표로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 14 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 15 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집행부 각 부장, 전공학회장, 동아리연합회장으로 한다.

제 16 조(의장) 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이며 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계승한다.

제 17 조(소집)

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2. 정기회는 매 학기 초에 의장이 소집한다.
3. 임시회는 의장 또는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제 18 조(업무 및 권한)

1. 총학생회 회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2. 본 회 전체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한다.

[전면개정2015.1.1.]

3. 본 회 전체 예산 및 결산을 심의, 승인한다.
4. 학교 당국에 본 회를 대표하여 건의안을 제출한다.
5.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불신임 발의권과 집행부의 부장에 대한 해임의결권을 갖는다.

제 19 조(개회 및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집행부

제 20 조(지위) 집행부는 본 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 21 조(구성)

1. 집행부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총무 및 회계와 서기, 각 부장으로 구성한다.
2. 업무 수행을 위해 회계 및 서기는 차장 1 인, 각 부장은 차장 최대 2 인을 둘 수 있다.

제 22 조(업무 및 권한)

1. 집행부는 총학생회장의 동의하에 소관업무를 집행한다.
2. 사업보고서와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 업무수행 상 부 신설이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와 학교 당국의 협의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제반활동 집행을 위해 예배선교부, 열린복지부, 행정지원부, 언론기획부, 대외협력부를 둔다.
 - 4-1. 예배선교부 : 본 회의 기독교 신앙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 4-2. 열린복지부 : 본 회의 학생복지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 4-3. 행정지원부 : 본 회의 행정업무와 편의 서비스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전문개정2015.1.1.]

4-4. 언론기획부 : 본 회의 언론과 홍보 및 기획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4-5. 대외협력부 : 본 회의 대외적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제 5 장 전공학회

제 23 조(지위) 각 전공학회는 전공의 최고 학생기구이다.

제 24 조(구성) 각 전공학회는 해당 전공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5 조(회장 및 부회장)

1. 각 전공학회 회장 및 부회장은 해당 전공의 모든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2. 각 전공학회장은 해당 전공의 학생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당 과의 사업계획과 입장을 표현한다.

제 26 조(업무 및 권한) 각 전공학회는 본 회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회칙과 조직을 가지고 해당 학회의 자치활동을 수행한다.

제 6 장 동아리연합회

제 27 조(목적 및 구성)

1. 동아리연합회는 제 2 조에 의거하여 본교의 학우 간 화합을 도모하고 기독교 문화 창달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동아리연합회는 본 회에 등록된 동아리로 구성한다.
3. 동아리연합회는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위해 회장 1 인을 둔다.

[전면개정2015.1.1.]

4. 동아리연합회장은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 28 조(회장)

1. 동아리연합회장은 동아리장 중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동아리연합회장은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 29 조(업무 및 권한) 동아리연합회는 각 동아리 활동에 관한 기획, 조정, 지원 등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회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각 전도반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한다.

제 7 장 선거

제 30 조(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연직 운영위원회 위원 5 명(각 전공학회장)과 운영위원회 추천 위원 10 명으로 한다.
3. 선거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있다.

제 31 조(위원장)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추천하여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 32 조(소집 및 해산) 선거관리위원회는 10 월 중 소집하여 선거에 관한 업무 및 권한을 추진하며, 11 월 중에 선거를 실시한다. 당선자를 발표한 후 해산 된다.

제 33 조(업무 및 권한)

1. 선거 공고문 게시
2. 후보자 접수 및 등록
4. 정견발표 주관 및 후보자 토론회 주관

[전면개정2015.1.1.]

5. 후보자 선거운동 활동관리
6. 부정선거 감시
7. 투표 및 개표 진행

제 34 조(후보자 자격)

1. 후보자는 총학생회장 1 인, 부총학생회장 1 인으로 구성된다.
2. 총학생회장은 본 회의 회원으로 4 학기(현 학기 포함) 이상을 등록한 자로 한다.
3. 부총학생회장은 2 학기(현학기 포함) 이상을 등록한 자로 한다.
4. 후보자는 당선 시 수업의 2/3 이상을 자신이 선택한 학적의 수업을 수강해야 한다.
5. 후보자의 직전 학기 평점평균이 2.7 이상인 자로 한다.
6. 학칙을 위반하거나 정학 이상의 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제 35 조(후보자 등록)

1. 소속 주임교수 후보등록 추천서 1 부
2. 소속 학회장 후보등록 추천서 1 부
3. 투개표 참관인 동의서 1 부
4. 후보 추천인 명부 1 부 (본 회 회원 중 200 명 이상 추천)
5. 재학 및 성적증명서 각 1 부
6. 명함판 사진 1 매
7. 후보자 공약서 1 부

제 36 조(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 인증을 거친 후 투표전일까지 할 수 있다.
2. 포스터와 동영상 및 현수막은 임의로 제작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을 거친 이후 사용 할 수 있다.
3. 인근 지역의 상점 및 관계기관의 후원은 후보자의 능력여하에 따라 받을 수 있고 제한을 두지 않는다.
4. 정견발표는 교목실과 교학처에 채플 및 수업시간 양해 등 협조를 득한 후 채플 직후 각 후보별로 발표한다. (정견발표 형식 및 시간

[전문개정2015.1.1.]

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정한 방침을 따른다.)

5. 후보자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여 참여인원, 방법, 장소, 시간을 학교 측 협의 후 결정한다.

제 37 조(투표)

1. 본 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한다.
2. 투표시간은 08:30 ~ 21:00 까지 한다.
3. 투표자는 선거인 명부에서 명단 확인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한다.
4. 투표용지에 이중으로 도장이 찍히거나 후보자 간 중간에 찍힐 경우 무효처리 되며, 기표도장 이외의 필기구는 모두 무효처리한다.
5. 투표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2 명과 참관인 2 명이 있어야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제 38 조(개표)

1. 투표시간이 종료 후 각 후보의 참관인 2 명, 선거관리위원회, 교학처 직원 1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학처 내에서 개표를 진행한다.
2. 각 후보자의 참관인 미 참석 시 개표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무효투표 발생 시 각 후보자 참관인과 선거관리위원회, 학생팀장의 동의하에 무효처리한다.

제 39 조(당선자의 결정)

1. 다수 후보자일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의 득표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최고 득표수가 동일 할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2. 단일 후보자일 경우 유권자의 재적인원의 과반수이상 투표해야 하며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기준 미달 시 재투표 한다.(재투표 시 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3. 단일 후보자 재투표 경우 유권자의 재적인원의 절반이상 투표해야 하며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단일 후보자 재투표에서 찬성득표를 못하거나 기준 미달 시 운영위원회 임시회를 소집하여 논의한다.)

[전면개정2015.1.1.]

5. 당선자가 결정 시 참관인 전체의 확인절차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익일 공고한다.

제 40 조(선거기간과 절차)

1. 선거 공고일로부터 14 일 동안 후보등록을 받는다.
2. 후보등록 인준 후 14 일 동안 선거활동 홍보를 한다.
3.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학교 측 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다.

제 41 조(보권선거)

1.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권위된 때 그 잔여임기가 150 일 이상인 경우 권위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한다.
2.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권위된 때 그 잔여임기가 150 일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각 전공학회장 중 1 인을 추천하여 총학생회장직을 계승한다.

제 8 장 재정

제 42 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총학생회비와 그 이자, 학교 보조금, 지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 43 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임원의 임기 년도로 한다.

제 44 조(예결산)

1.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2. 본 회의 재원의 잔액은 차기연도에 이월시킨다.
3. 재원을 집행하는 기구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일체의 경비를 기록해야 한다.
4. 학교 보조금은 집행 후 15 일 이내에 학교 측에 영수증을 첨부한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9 장 회칙개정

제 45 조(발의) 회칙 개정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된다.

1. 총학생회장 발의
2. 운영위원회의 2/3 이상의 연서에 따른 발의
3. 본 회원의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발의

제 46 조(회칙 개정안 공고)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면 운영위원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 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2. 신, 구 조문 대비표
3.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제 47 조(회칙 개정안 의결)

1. 회칙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다.
2. 회칙 개정은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출석,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의결된다.

제 48 조(회칙정리) 회칙에서 조항, 자구, 숫자 또는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회칙의 본 의도를 훼손하거나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49 조(회칙공포) 확정된 회칙 개정안은 3 일 이내에 총학생회장이 공포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전면개정2015.1.1.]

부칙

제 1 조(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 후 2015 년 1 월 1 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종전의 한국성서대학교 총학생회 회칙은 2014 년 12 월 31 일부로 폐지한다.